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

제출년월일 : 199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 안 이 유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2조 제1항 기금조성 재원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전광역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업무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기금 조성근거를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제1항).
나.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조정함(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다.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계장으로 조정함 (안 제10조).

3. 참 고 사 항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제14조
다. 대전광역시 직제규칙 제13조 및 동규칙 (별표) 계사무 분장표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중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

제10조중 “생활지도계장”을 “여성정책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업체 및 독지가 성금, 여성단체 활동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 등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 1. 시의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 (위원회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 및 부녀복지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부녀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녀복지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③---------- ---------- 1. --------여성복지---------- ------ 2. ---------- 3. 여성복지---------- ④ ---------- ----------여성복지------- ----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지도계장으로 한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 ---------- ---------- ----------여성정책계장---------

참 고 사 항

(관 련 법 규)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 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 심사위원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들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 4 편 기획관리 대전광역시직제규칙

7.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제13조(가정복지국) ①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여성복지과·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여성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청소년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3. 노인·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4. 노인·아동법인 인가 및 시설의 지도·감독
5. 가정의례실천 및 의례업소 지도·감독
6. 부자가정 보호지원
7. 여성회관(아동상담 및 아동복지업무) 지도·감독
8.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여성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여성의 지위향상 및 교양에 관한 사항
3.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상담에 관한 사항
4. 여성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부녀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6. 여성회관(아동분야 제외) 지도·감독

⑤ 청소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대책업무의 종합기획
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소년 위원회 운영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5.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
6. 청소년 상담
7.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지도·감독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별표) < 개정 96. 2. 21 규칙 제2044호 >

계 사 무 분 장 표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계	1. 여성정책행정의 종합계획 및 수립조정
		2. 관계행정기관간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3.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4. 여성 자원활동 지원사업
		5.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6. 여성 대외협력사업
		7.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8. 여성단체에 관한사항
		9.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10. 여성능력개발사업
		11. 여성교양 및 사회교육에 관한사항
		12.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여성생활계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부녀복지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
		3.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에 관한사항
		5.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지원
		6. 모자복지기금 관리에 관한업무
		7. 미혼모 예방사업
		8. 가정문제 및 불우여성 상담
		9. 영세층 무료 합동결혼사업 지원
		10.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11. 여성직업보도를 위한 사업
		12. 건전가정 육성에 관한사항
		13. 여성회관 업무에 관한사항
청소년과	청소년계	1. 청소년 대책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청소년 위원회 운영
		3.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모범청소년 포상